

서 울 행 정 법 원
행정 13 부
[2017구합83096]

사 건 명 : 보험급여결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원고1

경기도 광명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 종결 : 2018. 12. 6.

판결 선고 : 2019. 2. 19.

주 문

-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이다.

나.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자 선장인 ○○○(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과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선박에서 화장(조리사)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망인은 2016. 10. 22. 22:00경 전남 ○○군 ○○도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대기중인 이 사건 선박의 선원 침실에서 동료 선원 3명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9. 망인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111,245,000원을 유족급여로 결정하였다(이하 위 처분중 어선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산정되는 직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부터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선장은 인근의 항구에 기항하여 의료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여 선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선장은 망인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샘암종, 화농성 염증이 악화되고 장관 파열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샘암종으로 장관 파열이 된 경우 적기에 치료하면 복막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복막염으로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3일 이내에 수술한다면 복막염의 완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은 30분이면 ○○도 소재 병원에, 3시간이면 ○○ 소재 병원에 망인을 후송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던 망인이 해상 조업이라는 직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비록 위 질병 자체가 직무상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선원 경력 및 이 사건 선박에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은 선원생활을 25년 정도 하였고 이 사건 선박에는 2016. 8. 15.경부터 승선하였다.

나) 선장과 망인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2016. 10. 7. 전남 ○○군 ○○면 ○○항에서 출항하였고, 2016. 10. 12.까지 5일 가량 전남 ○○군 ○○면 ○○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화장(조리사)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장 및 선원 3명은 2016. 10. 13. 및 2016. 10. 14. 망인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 ○경비안전서 ○○○○정보과 ○○계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6. 10. 13. 자 진술

- 2016. 10. 13.(2016. 10. 12.의 오기로 보인다) 오전경에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조업을 할 수 없어, 저를 비롯한 선원들 모두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같은 날 17:00 경 날씨가 좋아지자 저희는 곧바로 양망작업을 했다. 그러나 망인이 갑판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침실로 가서 망인에게 '형님, 어째 안나오요, 힘들어서 그려요, 힘들면 배를 내리죠, 소개소에다 다른 사람 구해달라고 말해 놨은게'라고 말했다. 그러자 망인이 저에게 '배가 아프니까, 하루만 더 쉬면 안되겠소'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희는 망인 없이 양망작업을 했다. 중간에 제가 침실로 가서 망인에게 '밥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니까 망인이 저에게 '오늘은 쉬고 내일터 밥을 하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 평소 망인이 앓고 있던 지병 등에 관한 것은 전혀 모르겠다. 배를 탄지 약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저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전혀 모르겠다.

■ 2016. 10. 14. 자 2차 진술

- 선장
- 2016. 10. 11. 15:00경 전남 ○○군 ○○도 인근 해상에서 선수갑판에 선원들이 모두 모여 양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인이 갑바(작업용 옷)를 벗고 아무 말 없이 선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어째 형님 들어가시요'라고 하니, 망인이 '배가 살살 아픈게 하루만 쉬세'하며 선원침실로 들어갔다. 그후 제가 선원 침실로 들어가 보니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형님, 안아프구만 그럼 나와서 일해야제'라고 하니, 망인이 '그래도 하루 쉬기로 했으니까 하루 쉬어야제'라고 했고, 저는 망인이 침실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침실에서 나와 작업을 계속 했다. 그렇게 망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망인은 양망시 선수에서 공(부이)을 들어주는 일 정도만 한다.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일은 시키지 않는다.
 - 원래 얼굴빛이 검어서 얼굴로는 상태를 잘 몰랐다. 처음 승선할 때부터 몸이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가끔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봤고 원체 말수가 없어서 상태다 어떻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 망인이 병원에 보내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 망인이 아프다는 것을 안 날(11일) 저녁 조업을 마치고 재가 선실로 가서 망인에게 '형님 정 안되것으면 내려줄라니까 얘기하쇼'라고 했더니 망인이 '내가 더 아프면 이야기 할라니까, 그 때 내려주라'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병원에

	<p>데려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리고 ○○도에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이야기만 했다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망인이 아프다고 선원침실에 들어간 다음 다른 선원들에게 물어보니 '선장님 배가 좀 아프다네요'라고 이야기 한 것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다. 그날도 아프다고 침실에 들어가기 전 점심식사까지 준비해 주는 등 일은 계속 했었다.</p>
선원1	<p>■ 2016. 10. 13. 자 2차 진술</p> <p>○ 2016. 10. 12. 오전 날씨가 좋지 않아 망인을 포함한 모두가 선원침실에서 쉬고 있었고 망인은 점심식사때도 식사준비를 해주지 않고 선원침실에 있었으며 점심은 나머지 선원들끼리 먹었다. 이후 17:00경 작업 시작을 알리는 엔진소리를 듣고 일어나 갑판으로 나왔는데 망인이 배가 아파서 오늘 작업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갑판으로 나오지 않고 선원침실에 있었다. 나머지 선원들은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0경 넘어서 작업을 마쳤고 그때까지 망인은 선원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식사도 선원들끼리 식사를 했다. 21:00경 식사를 마치고 선원침실로 들어가 보니 망인이 자신의 자리에 누워있었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데 발음이 부정확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당시 선장님은 조타실에 있었고 저와 망인을 포함한 선원 4명 모두 선원침실에 들어간 상태였다. 저와 다른 선원들 모두 침실에 들어가 곧바로 각자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제가 잠들기 전까지 망인이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후 잠이 들었다. 22:0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깼고 망인이 하루 종일 아프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인의 다리를 훤히 봤다.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호흡이 없었다.</p> <p>○ 2016. 10. 12. 망인을 본 것은 17:00경 작업을 시작할 때 선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21:0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원침실로 들어갔을 때 본 것이 전부이다.</p> <p>○ 망인이 아프다고 한 것은 3일 정도 된 것 같다. 언젠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위가 안 좋은갑네?'라고 물었더니, 망인이 '좀 안 좋네'라고 이야기했다.</p> <p>○ 망인이 약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힘을 거의 못쓸 정도로 약했다.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생보다 힘이 약해던 것 같다.</p>
선원2	<p>■ 2016. 10. 13. 자 진술</p> <p>○ 어제 오전에는 날이 좋지 않아서 조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원들 모두는 침실에 있었고 저는 기관실에 청수를 넣는 작업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라면을 끓여서 선원들 모두 선미 식당칸에서 식사를 했다. 당시 망인은 선실에 누워 있었다. 저희 선원들 모두 점심식사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선원들 모두는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당시에도 망인은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 날 17:00경 엔진소리가 들리자 선원들 모두 일제히 작업을 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갔는데 망인은 갑판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망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양망작업을 했다. 같은 날 18:30경에 망인이 선미 식당칸에 나와서 식당안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망인에게 '아프면 선실에서 누워 있어요'라고 말하고 저는 선수 갑판으로 가서 다시 선원들과 함께 양망작업을 했다. 이후 같은 날 20:00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선원들은 선미 식당칸에서 식사를 했다. 그 당시에도 망인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이 선미 식당칸에서 식사를 했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식사를 했다.</p> <p>○ 저는 망인이 아픈 사실을 몰랐다. 그냥 어제 망인이 아파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p>

	<p>실만 알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인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 망인의 사망 무렵 신음소리 같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 무척 피곤해서 듣지 못했다.
선원3	<p>■ 2016. 10. 13. 자 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인이 대략 3일 전부터 선실에서 선원들이 쉴 때 배를 만지면서 배가 아프다고 동료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별다른 행동이나 추가적인 말이 없어 그려려니 하고 지나갔었고, 그러다 어제 아침부터 망인이 몸이 안 좋다면 밥도 해주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선실에서 계속 누워 쉬기만 했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선원들은 다른 선원들은 망인이 평소에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은 안 쓰게 되었다.
선원 1,2,3 중1인	<p>■ 2016. 10. 14. 자 2차 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11. 저녁경 도모칸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망인이 저에게 ' 속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 속이 안 좋으면 선원침실에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저는 선수 가서 일을 다시 했다. 당시 망인이 다른 곳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선미 도모칸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망인에게 ' 왜 식사를 안 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망인이 저에게 ' 속이 안 좋아서 밥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 망인이 저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다.
선원 1,2,3 중1인	<p>■ 2016. 10. 14. 자 2차 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인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1일 점심과 저녁 전이었던 같다. ○ 망인이 11일 점심까지는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오후에 선수갑판에서 양망준비작업을 했다. 그런데 망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고 선원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망인이 식사준비를 하지 않고 갑판장인 ○○○이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먹었고,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아 ' 왜 밥을 안 먹어요 '하고 물었더니, ' 속이 안 좋아서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 안 좋으면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렇게 망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다. ○ 망인으로부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 선장은 평소 선원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잘해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 미상 '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을 부검한 ○○○○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부검소견과 조직검사소견을 종합하여 ' ① 돌창자, 막창자 연결부위에서 고도의 화농성 염증과 샘암종을 보고, 배공간에서 다량의 화농성 복수와 복막염을 보며, 혈액에서 C-반응단백질이 24.1mg/dl로 검출되는 바, 이는 샘암종 및 장관 파열에 의한 화농성 복막염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② 폐결핵의 소견을 보나, 이는 왼쪽 폐 상엽에 제한된 만성

적안 병변이고, 기타 내부장기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③ 신체부위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④ 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상 법의학적으로 특기할 소견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⑤ 위내용물 및 혈액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⑥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 ⑦ 혈액에서 케톤체류가 검출되지 않는 점, ⑧ 사건개요상 망인은 선원으로 3일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선원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자인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이 막창자 샘암종 및 장관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검의의 부검소견중 내부검사와 관련해서 '간, 신장, 비장 및 췌장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고, 위안은 거의 비어 있는 양상임. 돌창자와 막창자의 연결부위의 주로 막창자에서 장관 벽이 두꺼워져 있는 소견을 보고 화농성의 염증 소견을 봄'이라는 내용이 있다.

다) 피고가 자문의뢰한 ○○○병원 내과의사 ○○○,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는 모두 피고가 보낸 양식 중 '망인의 막창자 샘암종 및 장관 파열에 의한 복막염의 발병원인은?'이라는 질문에 '기타 잠재되어 있던 개인력이 발현하여 발병'이라는 미리 마련된 보기 부분을 표시하고, '망인의 질환이 기왕증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볼 때 망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질병이 직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미리 마련된 보기 부분을 표시하여 회신하였다, 그 외에 위 의사들이 위 회신을 하면서 추가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1) 위 의사 ○○○은 '막창자는 대장의 일부이다. 대장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염증성 장질환, 대장의 용종, 가족력 등이 있다', '망인은 유전적 요소와 더불어 대장암 발생이 용이한 음식물의 섭취, 대장 용종의 암으로의 발전 등과 같은 원인으로 대장암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암이 대장벽에 발생하면 대장벽에 천공(구멍)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한 대장 내용물이 대장 밖으로 유출되면서 복막염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위 의사 ○○○는 '돌창자(회장)와 막창자(맹장) 연결부위와 막창자에 암이 발생하여 충수돌기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대장암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연령증가와 식이습관,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 요인에 의해서 발병한다', '상기 병명의 발병은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선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복막염의 조기 치료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선상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보아 직무외 질환으로 판단된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위 의사 ○○○는 '업무수행과 별도로 개인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사망 이전 발견 및 치료가 되지 않은 대장암에 의해 물리적으로 대장이 막히면서 천공이 일어나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적 요인 찾을 수 없다', '개인질환인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크기가 증가하여 대장 폐색 및 파열(천공)을 일으키며 그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업무와 사망원인은 서로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적 악화 요인 없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외과 의사 ○○○(이하 '감정의'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내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 5년동안 진료받은 내역 중 샘암종이나 복막염과 관련지을 만한 질환은 없다.
- 대부분의 대장암이 샘암종인데, 대장암의 발생수준은 남자에서는 위암, 폐암, 간암 다음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장암 중에서 조직학적으로 선관 및 소포를 형성하거나 유두상 형태를 취하는 암을 샘암종이라고 한다(현미경으로 확인한 조직학적 구분임).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1980년대 이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의 발생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암유전자나 종양억제유전자가 관여하며 이러한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소가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원인으로는 부족한 섬유소(야채 섭취의 부족), 동물성 지방, 담즙산, 담낭절제술의 과거력, 위수술, 방사선조사 등이 있다.
- 샘암종이 진행하여 장벽을 완전히 침윤하여 암궤양이 깊어져 천공되기도 한다. 대장암의

약 7%에서 천공이 발생한다. 막창자가 가장 흔하고 암부위 또는 주변이 천공되어 국소적 혹은 범발성 복막염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 샘암종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국소적 복부 압통, 일부 식사나 근로가 가능하고, 장관의 천공을 일으키고 복막염이 생긴 경우 식사나 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샘암종 발생 후 암이 진행되어 천공하기까지의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며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다양하다. 천공 후 복막염으로까지의 이행 시간 역시 수시간에서 수일로 개인차가 있다.

○ 복막염은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서 위, 소장, 대장 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사건과 연관된 대장에 국한되어 살펴보면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게실성 질환, 충수돌기염, 염전, 방사선괴사, 외상, 수술후 누출 등의 원인이 있다.

○ 망인이 장관 파열에 이른 원인은 돌창자의 샘암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돌창자에 위치한 충수돌기염(맹장염을 의미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과정이 돌창자에 위치한 암의 천공시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장관 파열을 적기에 치료하면 복막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돌창자에 발생한 샘암종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생긴 것이다.

○ 급성 복막염은 복부 팽만, 전반적인 복부 압통, 구토, 탈수 등의 증상이 있다.

○ 급성 복막염은 적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상태가 위중한 경우 예를 들어 장폐색을 동반하고 숙변성 궤양을 동반한 경우 복부 팽만, 전박적인 복부 압통, 구토, 탈수 등의 복막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므로 수술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장폐색 없이 암의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의 경우는 급성 장폐색이 없으므로 복강오염이 덜하고 탈수나 전해질을 교정할 수 있어 대부분 성공적 수술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범발성 복막염이 아닌 국소적 복막염의 경우는 대부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 샘암종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지 않은 샘암종의 경우 간이나 폐 등의 원격 전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 망인의 혈액에서 C-반응 단백질이 24.1mg/dl로 검출된 것은 체내에 염증이 있다는 의학적 의미를 가지며 복막염으로 인해 염증 지수인 C-반응 단백질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정확한 판단은 힘들지만 참고인 진술중 망인이 사망 3일 전부터 몸이 아팠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상으로 호소한 지 1일안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 확률이 높고 2일 안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성이 절반 정도, 사망 당일 후송이 되었다면 낮은 확률로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동료 선원들의 참고인 진술상 3일 전부터 증상 호소, 1일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누워 있던 것으로 미루어 2일째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추측한 내용이다.

마) 한편, 망인에 대한 사망 전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경추통, 상세불명의 위염, 식도역류병, 이두근 힘줄염,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피부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막창자 샘암종 및 복막염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위치 등

2016. 10. 12. 22:00경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선장은 이 사건 선박을 전남 ○○군 ○○ 소재 ○○선착장으로 항행하던 중 23:37경 어업정보통신국에 상황을 보고하였다. 23:41경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경비안전서는 23:45경 선장과 5분간 통화하여 '역조로 인한 속력저하로 경비함정에 의한 이송요청'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선박과 10해리 거리에 있던 경비함정을 이 사건 선박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경비함정은 2016. 10. 13. 00:20경 이 사건 선박과 상봉한 후 망인을 인계받고 00:55경 위 ○○선착장에 도착한 다음 01:05경 위 ○○ 소재 ○○병원 후송예정인 119구급대에 망인을 인계하였다.

○○○○경비안전서가 상황을 전달받았던 2016. 10. 12. 23:41경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전남 ○○군 ○○도 남서방 약 8해리 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비함정은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망인을 인계받고 2016. 10. 13. 00:35경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어선원 등의 재해'에 관하여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사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어선원 등의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사망'이라 함은 어선원이 직무 수행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어선원의 사망, 즉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수사과학원 부검의의 의견, 피고가 자문의뢰한 의사들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록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기재가 있으나, 샘암 종과 장관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보이고. 그중 망인의 샘암종이 직무상 발병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장관 파열에 의한 복막염의 발병·악화 및 그로 인한 사망이 망인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먼저 장관 파열 내지 복막염의 발병이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해상에서의 조업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복통이 생겼으면서도 곧바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복막염으로까지 악화되었다면 복막염은 직무상 생긴 질병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관 파열 내지 복막염의 발병을 직무상 질병으로는 볼 수 없다.

가) 피고가 자문의뢰한 ○○○병원 내과 의사 ○○○,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는 모두 '장관 파열에 의한 복막염은 잠재되어 있던 개인력이 발현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 의사 ○○○은 '암이 대장벽에 발생하면 대장벽에 천공(구멍)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장 내용물이 대장 밖으로 유출되면서 복막염으로 발전하였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위 의사 ○○○는 '돌창자(회장)와 막창자(맹장) 연결 부위와 막창자에 암이 발생하여 충수돌기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위 의사 ○○○는 '사망 이전 발견 및 치료가 되지 않는 대장암에 의해 물리적으로 대장이 막히면서 천공이 일어나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각 밝혔다.

나) 감정의는 '샘암종이 진행하여 장벽을 완전히 침윤하여 암궤양이 깊어져 천공되기도 한다. 대장암의 약 7%에서 천공이 발생한다. 막창자가 가장 흔하고 암부위 또는 주변이 천공되어 국소적 혹은 범발성 복막염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망인이 장관 파열에 이른 원인은 돌창자의 샘암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돌창자에 위치한 충수돌기염(맹장염을 의미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감정의는 샘암종의 증상에 대하여 염증이 생기는 경우 국소적 복부 압통이 있으나 일부 식사나 근로가 가능한데 반하여, 복막염이 생긴 경우에는 식사나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망인은 복통을 호소한 첫 날부터 식사나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때 이미 복막염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복통은 복막염의 증상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복막염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샘암종에서 장관 파열내지 복막염의 발병에 망인의 직무가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4) 다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복막염의 악화에 망인의 직무가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첫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장이 망인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던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에 의할 때 망인은 사망 2~3일 전 일부 선원에게 처음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망 1일 전 오후 내지 저녁부터 선원침실에서 계속 휴식을 취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배가 아프다거나 하루 정도 쉬게 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힘들면 내려주겠으니 이야기하라'는 선장의 말에 망인이 '더 아프면 이야기하겠으니 그 때 내려달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있던 선장 또는 선원들이 망인의 질병에 관하여 바로 병원에 보내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

를 수도 있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복막염의 일반적인 증상, 약간의 복통만으로 선장이 망인의 휴식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배가 약간 아프다고 말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선장 또는 선원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일관성 있는 선장 또는 선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복막염의 악화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직무가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과 법리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중하지 아니한 복막염이 망인의 직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선장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감정의는, 장폐색을 동반하고 숙변성 궤양을 동반하는 등으로 상태가 위중한 급성 복막염을 제외하면, 그와 같이 아니한 급성 복막염을 포함하여 범발성 내지 국소적 복막염 모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장폐색 없는 암의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의 경우 급성 장폐색이 없으므로 대부분 성공적 수술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따라서 망인의 복막염이 장폐색을 동반하는 급성 복막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자문의뢰한 의사 ○○○가 '대장이 막히면서 천공이 일어나 복막 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대장암의 크기가 증가하여 대장 폐색 및 파열(천공)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① 감정의는 '샘암종이 진행하여 장벽을 완전히 침윤하여 암궤양이 깊어져 천공되기도 한다'고 하며 그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의 경우 돌창자에 발생한 샘암종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생겼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피고가 자문의뢰한 다른 의사 ○○○ 역시 '암이 대장벽에 발생하면 대장벽에 천공(구멍)이 발생한다

'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또 다른 의사 ○○○는 '돌창자와 막창자 연결부위와 막창자 연결부위와 막창자에 암이 발생하여 충수돌기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부검의의 내부검사에 관한 부검소견에 의하더라도 '막창자 장관 벽이 두꺼워져 있다'는 소견 외에 별달리 장폐색에 관한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폐색을 동반하는 급성 복막염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장폐색 없는 암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었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감정의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유형의 복막염이 발병한 망인이 증상을 호소한지 1일 안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 확률이 높고 2일 안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절반 정도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자문의뢰한 의사 ○○○ 역시 '선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복막염의 조기 진료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선상에서 사망한 사건'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4) 이 사건 선박은 선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증상을 처음 호소한 당시 큰 병원이 소재한 ○○도까지 3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도 ○○병원이 소재한 ○○까지 3시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었다. 비록 망인은 증상을 호소한 이후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지 아니한 채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이 귀항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예정된 조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선장과 다른 선원들은 조업 내지 조업 직무 등 직무를 계속하였다.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라,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 등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한 때(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31조에서 경합조정주의 대상으로 정하는 법률로서 선박소유자의 유족 '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는 선원법 역시 제99조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어선원 등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그 직무상뿐만 아니라 승무 중에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재해와 직무의 관련성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승무 중 직무외 재해보상을 인정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직무상 사망 외에 직무외 사망도 유족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여, 기존질환이 직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함으로써 어선원재해보상법이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상 사망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이 제한 해석하는 것은 어선원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직무 외 사망까지 유족급여의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을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어선원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발생하였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중하지 아니한 기존질환이 격리된 육상에서의 업무 환경(예컨대, 시험 출제 내지 체점의 업무 환경)에 의하여 악화되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망인이 직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